2007년 9월 26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 회원 여러분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광고선전위원회

위원장 이나바 타미오

**“화장품의 성분표시 및 광고에서의 <약용 문자>의 사용중지”에 대해**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평소 광고선전위원회의 운영 및 각 활동에 대해 각별한 이해와 협조해 주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번 전국의약품 등 광고감시협의회(이하, “육자협”이라고 한다)의 2007년도 제1회 회의가 아이치현에서 개최(6월 26일~27일의 2일간)되었는데, 그 때, 광고감시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당 연합회와 육자협의 의견교환회가 개최(26일 오후 4시 10분)되었기 대문에, 광고선전위원회의 운영위원회 WG 멤버와 사무국이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당일의 의견교환회에서는 당 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록한 “(1) 제79회 화장품광고심의회(화장품잡지광고 심사결과)의 상황보고에 대해” 및 “(2) 장공련 <화장품 적정광고 가이드북(알기 쉬운 광고의 실제)>(가칭)에 대해”의 의제, 또한 이 자리에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문제로 제기된 “화장품에서의 표시 및 광고에서의 <약용 문자> 사용중지”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교환회의 자리에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문제로 제기된 취지로서, 먼저, 화장품업계에서는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 “성분표시 명칭으로 약용탄으로 표시”, “배합성분 중 특히 호소하고자 하는 성분 <약용탄>만을 눈에 띄게 표기”, “판매명 또는 판매명의 약칭 및 애칭에 <약용탄> 또는 <약용>의 표기” 등을 했다고 해도, 화장품 종별 허가기준(약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품목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장품의 성분을 지정하는 것(1961년 2월 후생노동성 고시 제15호)의 별표)에 게재한 성분 중 일본약국방 수재성분으로 “약용탄”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성분 배합량의 상한: 1% 이하이면 세정용 화장품에 대해서만 배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화장품의 품목별 사전승인 및 허가제의 폐지와 함께, 전체성분 표시제도의 도입에 따라 1999년 4월 30일에 장공련이 작성하여 공표한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리스트”에는 “표시명칭으로는 <탄>”과 “표시별 명칭으로는 <약용탄>”의 두 가지 명칭의 사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 부적합하다는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장품 종별 허가기준은 폐지되었고, 또한 2000년 6월 21일자 12 장공련 명칭 제2호 문서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명칭 리스트에서의 <표시별 명칭>의 취급에 대해”에 따라 2004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에서 “표시별 명칭”이 삭제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 나아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행정에 대해 화장품에 “약용탄” 또는 “약용”으로 표기했다는 점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향후 지도방침으로서 “화장품의 성분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 약용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장공련에 의한 자발적인 회원지도에 의해, 그 문자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 신청에 대한 광고선전위원회의 대응으로는 후생노동성에서의 신청 취지를 신중히 받아들여 올해 7월 30일에 개최한 제28회 광고선전위원회 정시총회에서 “(1)화장품의 배합성분으로 <탄>을 사용한 경우에는 성분표시명칭인 <탄>으로 표시한다”, “(2) 제품 패키지, 신문, 잡지 등으로 실시하는 광고에서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방으로서 <약용> 등의 문자를 사용한 광고를 중지한다”, “(3) 판매명 또는 판매명의 약칭 및 애칭에 대해서도 <약용> 문자의 사용을 중지한다” 및 “(4) 현재 제품에 그 표시 또는 광고가 실시된 경우에는 개선할 것”을 제안한 결과, 승낙을 얻었습니다.

관련하여, 장공련 산하 회원 각사에서는 광고선전위원회에서 승낙된 4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사내에서 정밀 조사하여 만일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지 및 개선을 위한 검토를 조기 실시하여 사내 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그 개선이 행해지도록 광고선전위원회에서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